

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(제44조의2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에서 중한 처분기준(중한 처분기준이동일 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의하며, 2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.
- 나. 처분기준의 1차·2차·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.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.
- 다.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처분기준			
	1차	2차	3차	4차
가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				
(1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	시정명령	지정취소		
(2) 농어촌민박사업	시정명령	시정명령	지정취소	
나. 관광농원에 입식작목의 경작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때	사업정지 5일	사업정지 1월	사업정지 3월	지정취소
다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				
(1)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지정취소
(2) 법 제6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때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지정취소
(3) 관광농원사업을 법 제73조 제1항단서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·양수한 때	시정명령	사업정지 1월	지정취소	
(4)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및 운영 개선 명령을				

이행하지 아니한 때				
(가)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지정취소	
(나) 농어촌민박사업	시정명령	사업정지 15일	사업정지 1월	지정취소
(5) 사업정지 처분기간 동안에 사업을 한 때	지정취소			